

 금융위원회	<b>보 도 자 료</b>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 하는 성장
	<b>보도</b>	<b>2019.5.7.(화) 조간부터</b>	배포	

<b>책 임 자</b>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신진창(02-2100-2830)	<b>담 당 자</b>	김성진 서기관(02-2100-2831) 조성조 사무관(02-2100-2843)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 김기한(02-2100-2630)		윤준구 사무관(02-2100-2631)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효선(02-2100-2801)		배수암 사무관(02-2100-2802)

**제 목 :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 개최**  
**- 기존규제정비위원회 및 그림자규제 혁신회의**

- ◆ 규제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혁신
- ◆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규제혁신이 지속 가능한 민간중심의 추진체계 활용
- ◆ 핀테크·빅데이터 등 新산업분야 규제개혁 종합방안 마련·추진
- ◆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 순차적 개선 추진
  - ① 행정지도 39건 중 8건 즉시 폐지, 22건 법규화 후 행정지도는 폐지
  - ②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한 명시적 규제 개선 착수
    - 1차회의에서 그간 경제계 건의과제 중 수용곤란·장기검토 과제로 분류했던 18건에 대해 다시 한번 심의해 4건 수용·대안제시
    - \* '신용카드 모집시 1사 전속주의 완화'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5.2)에 따른 운영상황을 보아 향후 일정요건을 갖춘 온라인채널에 한해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기로 결정
    - 5월 보험법규를 시작으로 20년말까지 789개의 명시적 규제 정비
  - ③ 협회 모범규준 등 자율규제 282건에 대한 정비 착수

**1 회의 개요**

- 5.3일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개최하였음
- 금일 회의는 그간 금융규제혁신 추진경과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sup>①</sup>', '그림자규제 혁신회의<sup>②</sup>' 등  
금융규제혁신 추진기구 소속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였음

- ① 각 부처별로 차관급 위원장, 민간위원 과반수로 구성·운영 → 금융위는 4월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15인(민간 9인)의 기존규제정비위원회 구성
- ② 그림자규제 정비를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협회, 금융위·금감원 참여

### <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019.5.3(금), 10:00~12: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 이순호 금융연 연구위원, 남재현 국민대 교수,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부장, 강경훈 동국대 교수, 서병호 금융연 연구위원,  
이효섭 자본연 연구위원, 김범 송실대 교수, 금감원·협회 관계자 등
- 논의사항 : 그간 규제혁신 추진경과 점검 및 향후 추진전략 등 논의  
(제1차 기존규제정비위원회 병행)

## 2

### 부위원장 모두발언

- 김용범 부위원장은 먼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간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경과를 설명함
  -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혁신지원법」 제정을 통한 혁신적 사업자의 진입 발판을 마련하고, 핀테크·빅데이터 등 新산업 분야의 '넓은 규제개선'에 우선 착수
  - 10차례가 넘는 현장소통을 통해 행정지도에 대한 시장 의견을 청취하고, 「음부즈만」을 중심으로 행정지도 필요성 등을 점검하여 개선 추진방향 마련
- 이어, 이전 규제정책과 차별화하여 '지속가능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을 위한 3가지 추진원칙을 수립하였음을 강조
  - ① 정부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개선하도록 '규제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관료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혁신의 추동력 확보
  - ② 또한, 규제를 존치해야 하는 경우라도, 요건을 나열하는 경직적 규제를 벗어나 유연한 분류, 포괄적 정의 등 '포괄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체계 전환

③ 민간이 주도적으로 규제혁신의 키를 쥌 수 있도록 시장 참여자,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규제혁신 추진 '거버넌스' 구축

□ 이러한 큰 원칙을 토대로, 하반기부터는 규제혁신의 가시적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감을 한층 높일 계획임을 밝힘

○ 진행 중인 행정지도 정비 및 핀테크 분야 낡은 규제개선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 추가로 법령·고시 등 명시적 규제, 금융협회 모범규준 등 비명시적 규제분야 개선에도 착수하여, '금융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

\* **명시적 금융규제** (법령·고시→기존규제정비위원회) + **비명시적 금융규제** (행정지도→옴부즈만, 모범규준→그림자규제 혁신회의) 영역 전반 포섭

○ 특히, 규제별 특성을 고려한 다층적 추진체계는 유지하되, 종합적·유기적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조 강화

□ 한편,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 소통과 협의, 모범사례 창출을 통한 체감도 제고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 민간 전문가들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지혜를 모으고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함

□ 앞으로 정부도 민간 중심의 규제혁신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 2분기 중 검사·제재 선진화, 면책규정 정비 등 '금융감독 혁신방안' 마련을 통해 '혁신금융'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

< 참고 : 금융규제혁신 추진체계 >

구 분	명시적 규제 (법령, 고시 등)	비명시적 규제	
		행정지도	자율규제
전통 금융업	기존규제(789)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행정지도(39) 옴부즈만	모범규준 등(282) 그림자규제 혁신회의
핀테크·빅데이터 등 新산업 분야	핀테크·빅데이터 등 新산업 분야 규제정비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를 전수 점검하고 순차적으로 개선 추진

\* 명시적 규제(789건) + 비명시적 규제(행정지도 39건 + 모범규준 282건)

- 행정지도 → 개선방향이 마련된 만큼 즉시 폐지·법규화 등 착수
- 명시적 규제·자율규제 → 규제개선 대상 및 방향 선정 후 개선 착수

## 1. 행정지도

- 현장소통과 '옴부즈만' 점검결과를 토대로 가시적인 규제감축에 착수

- ① 총 39건 행정지도(금융위 12개, 금감원 27개) 중 30건(약 77%)에 대해서 법규화 등을 거쳐 폐지

- 폐지대상 행정지도(8건)는 '19.6월까지 원칙적으로 모두 정비완료

\* (예) 투자자문업·일임업 모범규준, 금융회사 전산설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등

- 법규화 대상 행정지도\*(22건)는 명시적 규제로 전환후 비명시적 규제인 행정지도는 폐지

\* (예) 자산운용사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등

- ➔ 이를 통해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규화 추진시 규제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규제혁신 체감도를 개선할 계획

- ② 유지 필요성이 있는 행정지도(9건)에 대해서도 존치 또는 법규화 필요성 등을 상시 점검할 계획

\* (예)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된 '[금융행정지도 정비계획](#)'을 참조

## 2. 명시적 규제

□ **(추진체계)**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정비 추진

\* '19.4월 훈령으로 설치근거 마련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차관급)이며 15인으로 구성, 규제·금융 정책 전문가, 경제계 추천 인사 등 민간위원이 과반수(9명)

□ **(정비대상)** 국민생활과 기업 경영활동에 밀접하고 영향이 큰 규제

- 경제계·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법령 등)와 정부 자체적으로 개선이 용이한 행정규칙(고시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비 착수

□ **(5.3일 1차회의)** 現정부 출범이후 각종 계기를 통해 접수한 경제계 건의과제 중 종전의 검토과정에서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기로 했던 과제 18건\*을 다시 한번 중점 심의해 이 중 4건\*\*에 대해 수용·대안제시

\* (예) 1만원 미만 소액 신용카드 결제 거절 허용, 신용카드 모집시 1사 전속주의 완화 등

\*\* (예) 사모펀드 판단기준 합리화·투자자 수 기준완화, 클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등(☞참고)

- 수용이 어려운 건의과제 14건\*은 '규제입증책임 전환'에 따라 금융위가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

\* ①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수용곤란, ②규제완화가 아닌 규제강화 요구,

③이해관계가 첨예해 조정이 어려운 건의과제 등

- 다만, '신용카드 모집시 1사 전속주의 완화'에 대해서는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5.2)에 따른 운영상황을 보아,

\* 5개 핀테크 업체에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 특례 인정

- 향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온라인채널에 한해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

□ **(향후계획)** '19.5월 법령개정 수요가 많은 보험법규를 시작으로 '20년말까지 금융위 소관 규제(총 789개)에 대해 전수조사·정비

\* 보험법규(92개) → 자본시장법규(341개) → 금융산업·제도법규(356개) 등 순차 정비

### 3. 자율규제

□ (정비원칙) 법규에 근거없이 금융회사·소비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개선

\*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금융안정·규제탄력성 등을 종합 고려해 필요시 예외적으로 존치

□ (추진체계) 금융당국이 중심이 아닌 '규제 수요자'의 시각에서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회의체 구성·운영(그림자규제 혁신회의)

□ (추진일정) 금융권 의견수렴(3~4월) → 금융위·금감원 의견수렴(5월중) → 업권별·분과별 논의(5월중~6월말) → 전체회의(6월말) 과제확정

\* 은행 49건, 보험 32건, 금투·거래소 89건, 여전·저축은행·신협 112건 등 총 282건

○ 이후 폐지·개선 과제는 즉시 이행에 착수해 '19년말까지 완료, 법규화 과제는 별도로 설정한 기간까지 이행완료

[별첨] 부위원장 모두말씀, 금융행정지도 정비계획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소비자표시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a href="http://www.fsc.go.kr">http://www.fsc.go.kr</a>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fsc@korea.kr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	--	---	------------------------------	--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 1. 행정지도 정비과제

### ① (폐지 8건) 행정지도 목적달성, 법규화 완료 등

#### [예시1] 투자일임업 모범규준

- (기존) 비대면 투자일임계약(로보어드바이저)을 체결 절차에 동영상 교육 이수 포함 → (개선) 자율적으로 동영상 교육 등이 없는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절차 운용 가능
-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지적되어 왔던 동영상 시청 등의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어 가입자들의 편의성 제고(법령상 투자일임계약시 일반적 투자자보호 조치는 필요)

#### [예시2] 금융회사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 (기존) 임직원은 지정된 업무용 정보통신수단에 대해 업무 목적외 사용을 제한 → (개선)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내부통제 장치 마련
- 제정 당시('11년)와 비교할 때 개인 모바일 기기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 전산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상당부분 금융회사 내규에 既반영된 상황

### ② (명시적 규제로 전환 이후 폐지 22건) 법규 근거없는 의무부과 등

#### [예시1] 자산운용사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 (기존) 자산운용사의 신규 공모펀드 설정시 고유재산에서 2억원 이상을 3년 이상 투자 의무화 → (개선)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자산운용사와 투자자 간 성과를 공유하는 등 운용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법제화 이후 행정 지도를 폐지할 예정 (법제화 과정에서 규제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

#### [예시2]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 (기존) 행정지도를 통해 개인에 대한 대출 제한 → (개선) 사모펀드의 개인에 대한 대출은 그림자금융 등 부작용을 감안시 제한할 필요가 있어 법제화 이후 행정지도를 폐지할 예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 2. 자율규제 정비예시

#### [예시1] 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 운용지침 (은행)

- (현황) 최근 서민금융 업무가 은행 쏠림업점의 일반 업무로 확대되는 상황인 가운데, 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 설치 및 상담직원 배치 의무로 인해 오히려 은행 시설·인력 운용에 경직성을 초래 → (개선) 향후 업권별 논의시 폐지 검토

#### [예시2]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여전)

- (현황) 대고객 고지사항(카드 갱신발급, 이용한도 조정/증액/감액, 리볼빙 신청 등)마다 안내방법이 상이하고 복잡 → (개선) 최근 모바일 환경에 맞춰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를 추가하고, 금융권과 논의를 통해 안내방법 간소화 방안 모색

### 3. 제1차 기존규제 정비위원회

#### ◆ 건의 수용 또는 대안제시

##### ① 사모펀드 판단시 판단기준 합리화 및 투자자 수 기준완화

- (기존) 사모펀드 판단 기준이 “청약권유자 50인 미만”으로 설정 → (개선) 사모펀드 판단 기준을 “투자자 수 100인 이하”로 확대·개선하는 방안 마련
- (기대효과) 공·사모 판단기준 및 사모펀드 규제 등을 개선하여 사모펀드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 (개선방안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既제출 등)

##### ② 크라우드펀딩 규제개선

- (기존) ①연간 자금모집 한도 7억원, ②전매 금지 기간 1년 → (개선) ①연간 자금모집 한도 15억원으로 확대(既조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②전매 금지 기간 6개월로 축소(既조치, 자본시장법 개정)
- (기대효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로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 ③ 스톡옵션 회계 처리 개선

- (기존) 비상장 벤처 기업이 스톡옵션 등으로 재무상태가 미흡한 경우(계속사업 이익이 없는 등) 코스닥 상장 불가 (대안) 당기순이익이 없는 기업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경로(이익미실현상장, 기술특례상장)를 마련 및 스톡옵션 부여에 따른 적자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을 고려
- (기대효과) 스톡옵션 부여한 비상장 벤처기업의 상장을 통한 적기 자금조달 가능

##### ④ 비상장 벤처기업 투자지분의 원가법 회계처리 개선

- (기존) 국제회계기준에서 원가법 회계처리 가능한 예외사유를 원칙 중심으로 규정 (대안) IFRS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 근거(①최근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②원가가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감독지침을 제시
- (기대효과) 벤처캐피탈 등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 ◆ 존치 필요성 입증 사례

##### [예시1] 자금대출 은행의 구속행위 금지 기준 강화

- (건의내용) 구속행위로 간주되어 예금 등의 판매가 금지되는 기간(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6개월) 확대
- (규제 존치 필요성) 특정 거래를 모두 금지대상으로 보는 간주규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규제 강화시 중소기업이 가입하고 싶은 상품도 가입하지 못하는 등의 불합리한 경우 발생 가능

##### [예시2] 상호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폐지

- (건의내용)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폐지
- (규제 존치 필요성) 의무대출비율은 상호저축은행이 지역기반 관계형 서민금융 회사로서의 역할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이며, 규제 폐지시 경제력이 집중된 수도권 중심 경쟁 심화로 지방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심화 우려